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불합리한 중복 및 과잉 규제의 개선, 낙찰률 상향과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기관의 부조리 근절 등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건설업계도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면서 국회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선 당선자 이것만은 꼭!

“중기·창업·상인들 어려움에 귀 기울여달라”

강원경제 회복의 중추 역할을 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다. 도내 유권자들은 '강원경제 활성화'의 소망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현재 강원경제는 내수는 물론 수출도 침체기를 겪고 있다. 다가올 4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 정책은 오히려 도내 중소기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상인 등 경제인들로부터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서는 희망을 들어왔다.

“철재업체 퇴출 제도화”

■건설업체=남미영 원주 정동산업개발 대표



도내 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들다.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달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성사업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 업체들만 공사에 참여했다.

실제 600개가 넘는 지역 건설업체 중 1% 정도만 공사에 참여했다. 협력업체들도 외지 철재업체들이 많아 오히려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물량도 지역 제한 등 현행 법령을 적극 적용시켜주길 바란다. 공공기관들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지역 업체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당선자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주길 바란다. 도내 건설사들은 도내 물량을 외지 업체에 뺏기고 타 시도 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달라. 1년 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켜달라.

지자체 담당자들, 바뀐 규정 몰라 여전히 '구버전' 참고

뉴스 돋보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새 기준 불이행 왜?

작년 말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인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가운데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적용관련 규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해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거나 인찰보증금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여기에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의 체결한 사용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발주자가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등에

까다로운 보유자 만나면 낙찰자에 피해, 인식 못해 적용 오류 났을 발주처 책임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신기술·특허가 활용되지 않으면 시공과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등도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입찰공고문의 신기술·특허관련 문구는 '이 공사는 ○○발

주처와 신기술 보유업체 간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인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에 게 재된 신기술 사용협약과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인찰에 참가하기 바란다'가 모범답안이다.

그동안 조달청이 집행한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의 입찰공고문을 참고하면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낙찰사에 신기술·특허 보유자와의 협약체결과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해당 지자체 회계과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업무미숙에 따른 오류가 컸다.

경남의 한 지자체 계약담당자는 "올해부터 계약업무를 시작했다. 기준이 바뀐

것을 알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지적해준 것에 고마워 했다. 실제 이 관계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바뀐 기준을 확인한 다음 펼쳐든 자료는 바뀐 기준이 담기지 않은 구버전인 듯했다.

다수의 지자체들이 입찰공고문에 신기술·특허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그 피해가 낙찰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이미 계약까지 끝낸 몇몇 낙찰사를 취재한 결과 신기술이나 특허 보유사로부터 협약체결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받은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 영덕군이 발주한 지품면 신안리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지난달 수주한 유성산업 관계자는 "ESSA 공법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한 후 계약을 마무리했다. 기준대로 낙찰액의 82%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며 만족해 했다.

경남 통영시가 발주한 용남 연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적용된 FNR 공법 보유사인 대진환경산업 관계자는 "아직 개찰이 되지 않아 기술협약 관련 문의가 없었다. 하도급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고 시운전에 따른 소액의 기술료만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까다로운 기술보유자를 만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신기술·특허협약과 관련해 나타난 잡음들도 몇몇 무리한 요구를 한 기술보유자들에 의해 불거진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찰사가 기술협약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발주자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입찰공고를 한 책임이 발주자에 있다는 의미다.

권혁용기자 hykwon@

아하! 그렇구나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배분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조합원은 출자 의무를 진다. 출자 의무는 조합계약의 요소이며, 당사자 중에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조합계약이 아니다. 조합이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은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손실과 이익의 분담비율은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에 반하여 이익의 분배는 조합의 공동사업의 불가분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모든 조합원이 이익의 분배를 받아야 한다. 이익을 분배하는 이상 모든 조합원이 이익의 분배를 받아야 하고,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을 분배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익은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민법 제711조).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익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가? 조합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703조).

출자 의무가 이행되기 이전이라도 조합계약 성립 시에 조합은 이미 성립되고,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 출자 의무의 이행을 지

체하더라도 조합원인 것은 변함이 없다. 출자 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민법 제705조).

출자 의무를 지체하면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이상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채권과 그 연체이자 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 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